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238
------	------

2024. 12.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16일, 김형재 의원(찬성자 30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형재 의원)

1. 제안이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동 조례의 경우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국가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관람료 감면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시지정 국가유산 관람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지정유산 관람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안 제32조의2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을 위해 공개된 시지정유산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시지정유산에 대하여 국민, 국가유공자 등이 방문할 때 관람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

나. 개정안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시가 지정한 시지정유산에도 적용하여 국민,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에게 관련 유산을 방문하였을 때 관

람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최근 5년간 시가 지정한 시지정유산의 수를 살펴보면 2020년 639건에서 2024년 790건으로 총 151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형문화유산으로 2024년 기준으로 69.9%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2024년 시지정유산 수 >

(단위 : 건, '24.9월 기준)

구분	총계	무형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24년 항목추가	등록문화유산
2020	639	52	432	40	34	74		7
2021	675	52	460	40	35	77		11
2022	695	55	465	40	35	81		19
2023	754	55	521	40	35	83		20
2024	790	56	552	32	34	87	9	20

*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자연유산' 추가되어 기념물 중 8건, 민속문화유산 중 1건, 총 9건을 자연유산으로 항목 변경함

* 자연유산: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 790건의 시지정유산 중 3건의 유산(석파정, 동아일보사옥, 옥인동 박노수 가옥)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3,000원에서 20,000원까지 책정되어 있음.

< 시지정유산 관람료 징수 현황 >

순번	종목	지정번호	국가유산명	관리주체	개방	관람료
1	시도유형문화유산	제26호	석파정	(주)석파문화원	○	※석파정-서울미술관 통합 입장료 ·성인:20,000원 ·학생:15,000원 ·우대 및 미취학아동:13,000원 ·36개월미만:무료
2	시도유형문화유산	제31호	동아일보사옥	(주)동아일보사	○	※일민미술관 입장료 ·일반:9,000원 ·학생:7,000원(만24세이하학생증소지자) ·무료:만 65세 이상, 장애인, 미취학아동, 디스커버서울패스소지자
3	문화유산자료	제1호	옥인동 박노수 가옥	종로구	○	·어른: (개인)3,000원, (단체)1,800원 ·청소년:(개인)1,800원,(단체)1,200원 ·어린이:(개인)1,200원,(단체)600원 ·종로구민: 개인 또는 단체요금의 50%감면 ·한복착용자: 개인 또는 단체요금의 50%감면

- 특히 올해 9월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건설·제작된 지 50년이 되지 않은 유산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유산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권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2조의2(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 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3.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관람료 감면(안 제32조의2)

- 동 개정조례안은 관람료가 있는 시지정유산을 방문하는 사람 중 국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유산청은 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하여 「공·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의 관람료 감면 대상 또한 이와 유사 하기에 감면 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1)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2조에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시지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관람료 감면의 재량 또한 「지방 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 면에 관한 사항 역시 정할 수 있다는 사례(법제처 2020. 8. 26. 의견

1)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시 20-0189)를 참고할 때 시지정유산의 관람료 감면 조항에 대해선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2015년부터 문화유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지정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시행하였으며, 국가유산 관련 기본법률인 「국가유산기본법」 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유산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지정유산의 관람료 할인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 또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가 지정한 유산을 더욱 능동적으로 활용시키기 위한 방향에도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부합된다고 판단됨.

< 시·도지정유산 관람료 감면 조례 시행 현황 >

광역자치단체명	조례명	관련 조례조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6조(관람료의 감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1조(관람료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53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2조(관람료의 징수)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6조(관람료의 징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4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3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형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 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춘선, 신동원,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종환,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동 조례의 경우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국가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관람료 감면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시지정 국가유산 관람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지정유산 관람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안 제32조제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3.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2조의2(관람료의 감면) 시장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제1항</u> <u>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u> <u>시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u> <u>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 및 그 수행자</u> 2. <u>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u> 3. <u>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u> <u>자치구의 주민</u> 4.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u> <u>원에 관한 법률</u>」 제67조에 <u>해당하는 사람</u> 5. 「<u>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u> <u>법률</u>」 제23조에 해당하는 사 <u>람</u> 6.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u> <u>설립에 관한 법률</u>」 제10조에 <u>해당하는 사람</u> 7.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u> <u>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u> <u>률</u>」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u>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8.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u>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

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

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

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

는 보호자

13.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

는 사람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32조의2(관람료의 감면)	△	관람료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가 발생하나 관련부서 확인결과 추계를 위한 통계가 부족하고, 감면액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동 개정안 제32조의2(관람료의 감면)에 따라 시지정유산 관람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 발생의 여지가 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확인결과 감면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통계¹⁾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감면금액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현재로서는 소요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변수에 따라 세입감소 금액이 크게 달라져 본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사례를 준용한 자체 추계 또한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1) 관람료 감면 대상자별 관람빈도